

 금융위원회	<h1>보도자료</h1>			 법무부
	보도	2019.9.16.(월) 10:00시부터	배포	
책 임 자	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김 연 준(02-2100-2680)	담 당 자	박 석 훈 사무관 (02-2100-2682)	
	법무부 상사법무과장 명 한 석(02-2110-3167)		이 규 철 서기관 (02-2110-3256)	
	예탁결제원 전자증권본부장 김 정 미(02-3774-3136)		박 종 진 단 장 (02-3774-3040)	

제 목 : 오늘(9.16일)부터 전자증권제도가 시행됩니다.

- 전자증권제도, 혁신과 공정을 위한 새로운 시대를 엽니다. -

◆ 전자증권제도는 실물증권 발행 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발행·유통·권리행사가 가능한 제도

-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 공포(16.3월) 이후 3년 6개월의 준비기간을 거쳐 오늘(9.16일) 전자증권제도 시행

◆ 동 제도 도입으로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 해소

- ① (투자자) 실물증권의 위·변조, 도난 우려가 사라지고, 증자·배당 등 주주권리 행사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라짐
- ② (기업) 자금조달 소요기간이 크게 단축되고, 효과적인 주주관리가 가능해져 경영권 위협 등에 원활하게 대응 가능
- ③ (금융사)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고, 실물증권 관련 업무부담과 비용이 크게 경감
- ④ (정부) 세금탈루 목적의 실물증권 음성거래가 사라지고, 증권 발행·유통 정보를 활용하여 금융감독, 기업지배구조 개선 가능

※ 실물주권 소지자와 발행회사의 조치 필요사항

- ▶ 실물주권 소지자는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(예탁결제원, 국민은행, 하나은행)에 방문하여 '실물주권 반납→전자등록' 필요
- ▶ 전자증권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비상장기업 등은 '정관개정→전환신청→주주에게 공고(1개월 이상)·통지 등' 필요

I 그 간의 추진경과

□ 정부는 실물증권의 비효율*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전자증권제도 도입을 추진

* 예) 실물증권의 위·변조 사고 발생, 실물증권 발행·유통·보관비용 발생, 조세회피·자금세탁 등 음성적 거래차단의 어려움 등

○ '08.8월 금융위·법무부는 전자증권법 제정을 공동 추진기로 합의

※ 상법에는 주권·사채 전자화 근거만 규정하고, 세부사항은 특별법에서 정함

○ '09.4월 금융위는 준비단계로서 전자단기사채법 제정을 우선 추진

※ '11.6월 「전자단기사채등의 발행 및 유통에 관한 법률」 국회 통과, '13.1월 시행

○ '16.3월 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(이하 전자증권법) 제정

○ '19.6월 전자증권법 시행령 제정 → 제도 시행일을 '19.9.16.로 정함

○ '19.8월 전자증권법 관련 18개의 하위규정* 일괄 정비

* 제정규정 3건(고시 2건, 예탁원 규정 1건), 개정규정 15건

○ '19.9.16. 전자증권제도 시행

II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 개최

□ 9.16일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투자자·기업·금융기관 등에 제도 시행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「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」 개최

○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, 조국 법무부 장관,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, 전자증권법을 대표발의한 이종걸 의원 등이 참석

※ 전자증권제도 기념식 개요

• 일시/장소 : 9.16.(월), 10:30~11:30 / 여의도 콘래드호텔 3층 그랜드볼룸

• 주요 참석자 : (정부) 은성수 금융위원장, 조국 법무부장관

(국회) 민병두 정무위원장, 이종걸 의원, 김정훈 의원,
유의동 의원, 유동수 의원

(유관기관)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, 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 등

[금융위원장 축사 주요내용]

-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우리 경제의 발전에 발맞추어 주식과 채권 시장도 빠르게 성장*해 왔음을 언급하고,

* 1일 거래규모('19.9.5 기준): 상장주식 11조원(14억주), 상장채권 8조원

- 그간 예탁제도(1974년), 집중예탁제도(1994년)를 도입하였으나, 실물증권을 전제로 한 제도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

- 금융위원장은 전자증권제도를

- ① 한 마디로 요약한다면 **“증권의 디지털화(digitization)”** 라고 언급하면서,

- 증권발행·유통·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루어져 **비효율**은 사라지고 **절차**는 단축되며 **혁신**은 **가속화***될 것이라 강조

* 예탁원 오픈API를 통해 증권발행·유통 빅데이터 제공 → 혁신 핀테크 서비스 가능

- ② 또한, 자본시장 투명성을 담보하는 **“증권의 실명제(實名制)”** 라고 하면서,

- 증권발행·소유·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발행·위조·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**음성적 실물거래**가 불가능해질 것이라 강조

- 금융위원장은 영국의 경험을 예로 들며 자본시장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 **프론트 오피스**와 **백 오피스** 혁신이 함께 일어나야 함을 강조

- 전자증권제도가 백 오피스의 효율성을 높일 뿐 아니라, 금융산업 전반에 **혁신이 확산되는 모멘텀**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

※ 영국의 종이증권 위기(paper blizzard of certificates)

- 1986년 금융서비스법 제정, 거래소 전자거래서비스 도입 등으로 **프론트 오피스**의 혁신은 이루어졌으나, **백 오피스**는 종이증권 중심으로 운영
- 1987년 블랙먼데이 당시 주가폭락으로 매도주문이 폭증하여 백 오피스에서 처리하지 못해 거래 체결, 청산·결제 지연

- 아울러, 예탁원 등에 대해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,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 줄 것을 요청

- 특히,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뀔 때 따라 투자자·발행기업이 해킹·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으므로,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히 챙겨줄 것을 당부

[법무부 장관 축사 주요내용]

- 조국 법무부장은 '16년 3월 「전자증권법」 제정 경과 및 이후 준비 과정을 언급하며,
 - 법무부는 금융위원회와 함께 '19. 6월 시행령을 제정하고 대법원과 협의하여 대법원규칙을 개정하는 등 필요한 하위규정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, 한국예탁결제원을 중심으로 시스템 개발·對국민 홍보를 실시하는 등 안정적인 시행을 위하여 철저히 준비해왔음을 소개하고, 관계자 및 관계기관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달

- 조국 법무부장은 “전자증권제도 시행은 우리사회의 혁신과,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새로운 환경의 문을 여는 것”이라 평가하고,
 - “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개선 위한 자금조달, 또는 M&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 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”이라 하며,
 - “증권 실명제를 실현하여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, 기업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의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”이라 설명

-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으로,
 - 법무부는 혁신성장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 관련 법률 업무를 적극 지원하고, 공정경제를 위한 「상법」 개정,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, 최근에는 공정경제 성과 창출을 위한 「상법 시행령」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,

- “법무부장관으로서 공정경제를 바탕으로 한 혁신성장을 적극 지원할 것이다.” 고 의지를 표명

III 전자증권제도 주요 내용

- ① 전자증권제도는 **실물증권을 발행하지 않고 전자적 방법으로** 증권을 등록함으로써 **발행·유통·권리행사** 등이 이루어지는 제도
 - 동 제도가 도입되면 실물증권이 사라지고 전자적 방식에 의해 증권사무가 처리되므로 **자본시장의 효율성·투명성이 개선**

- ② 대부분의 증권은 전자등록이 가능
 - 성질상 전자등록이 적합하지 않은 일부 예외*를 제외하고 자본시장법상 증권은 대부분 전자등록이 가능

* ① 설권(設權)증권인 기업어음증권(CP), ② 비정형증권인 투자계약증권

< 전자증권법 적용대상 증권 >

자본시장법상 증권					기타 증권	
채무증권 CP	지분증권	수익증권	파생결합 증권	증권예탁 증권	투자계약 증권	CD

- ③ 증권 중 일부는 의무적으로 전자증권으로 전환해야 함
 - 상장주식·상장채권 등은 별도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**일괄 전환**되며(발행인의 신청 不要), **실물발행이 금지됨**(실물발행시 효력 무효)
 - 이 경우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 소지자*는 명의개서대행 회사에 **실물주권을 제출할 필요**(☞Q&A 4, 5번)

* 현재 상장주식 중 0.8% 내외 물량이 예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
 ※ 위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전자등록 당시 주주명부상 명의자 명의로 특별계좌에 등록되며 실물주권이 제출되기 전까지 이전 제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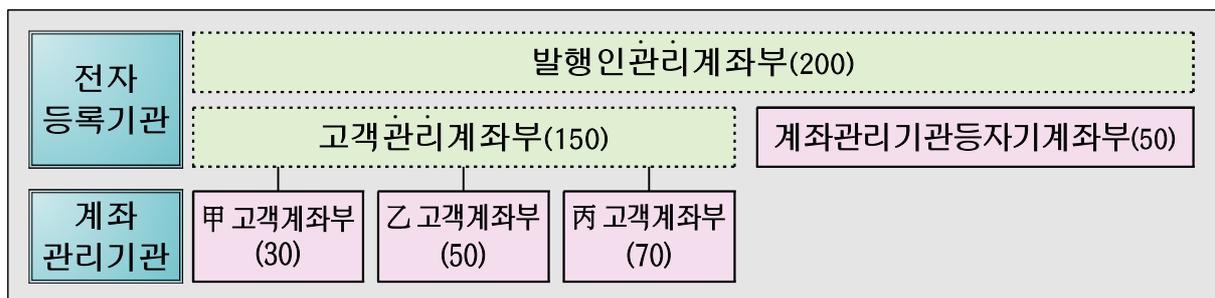
- ④ 의무전환대상이 아닌 증권은 발행인 신청을 통해 전자등록 가능
 - 발행인은 '정관변경 → 전자등록 신청 → 실물증권 회수절차 등의 공고(1개월 이상) 및 통지'가 필요(☞Q&A 8번)

5 전자계좌부에 등록함으로써 증권의 권리효력* 발생

- * ① (권리추정) 계좌부에 전자등록된 자는 적법한 권리보유자로 추정
- ② (권리이전·질권설정 등) 전자등록계좌부에 전자등록하여야 효력이 발생
- ③ (제3자 대항) 증권신탁 등의 경우 전자등록하여야 제3자 대항 가능 등

6 전자등록기관과 계좌관리기관이 사무*를 담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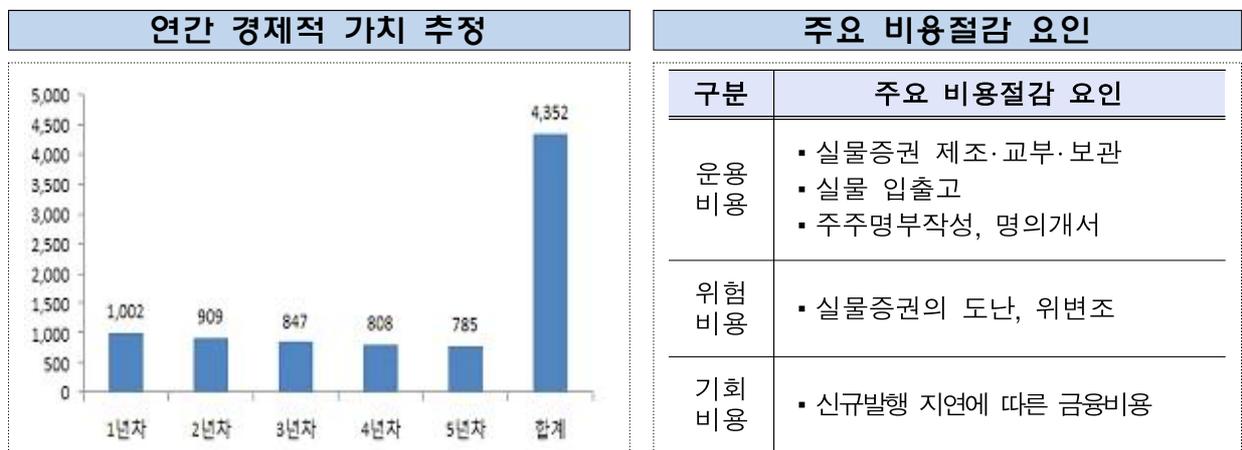
- * (전자등록기관) 전자증권의 총 발행내역·거래내역을 관리(예탁원이 수행)
- (계좌관리기관) 개별투자자의 전자증권 보유·매매를 관리(증권사·은행 등 수행)



IV 전자증권제도의 기대효과

- 전자증권제도는 증권이 실물로 발행·유통됨에 따른 비효율을 개선하고 음성거래 등을 방지하며 다양한 금융서비스의 혁신을 지원
- 제도 시행 후 5년간 총 4,352억원(자본시장연구원, '14.12월) 내지 9,045억원(삼일PWC, '17.11월)의 경제적 가치창출이 추정됨

< 경제적 가치창출 추정(자본연, '14.12월) >



(1) 주주·투자자 입장

① 증권 위·변조 등 사고로부터 피해위험 제거

- 실물 발행 없이 전자등록방식으로 증권이 발행됨에 따라 증권의 위·변조, 도난, 분실, 멸실 등의 위험*이 제거

※ 지난 5년간('13~'18년) 총 11회, 156조원 규모의 증권 위변조 시도가 있었음

- ◎ 사례 1 : '13년,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총 65.9조원을 중국에서 가짜로 만들어서 국내에 유통하려던 8명을 경찰이 발각, 구속
- ◎ 사례 2 : '14년, ○○전자의 총 56만주, 53억원 상당의 주식을 정교하게 위조해 명의개서를 시도한 자를 예탁원이 발견해 경찰에 인도

② 주주 권리(무상증자·주식배당·현금배당 등) 미수령 가능성 제거

- 무상증자·주식배당·현금배당시 투자자의 전자등록계좌로 권리내용이 자동등록되므로 미수령 등 발생 가능성 차단*

※ 실물주권 소지자의 권리미수령분의 가치는 약 880억원 이상

- ◎ 사례 1 :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는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명의개서대행회사에 방문하여 주식·배당금 등을 수령하지 않는 경우
- ◎ 사례 2 :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주주명부상 주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주식·배당 등을 할 수 없는 경우(실기주)

< 미수령 주식·현금 및 실기주의 규모('19.6월) >

사례 1(미수령 주식 등)	사례 2(실기주)
(주식) 601만주, (평가가치) 504억원	(주식) 178만주, (실기주과실) 375억원

③ 주주명부폐쇄기간이 없어짐에 따라 주주권 행사 편의성 증대

- 예탁제도에서는 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를 폐쇄*(7일~90일)할 경우 동 기간 동안 주주권 행사(명의개서, 질권등록, 신탁 등) 제한

* 예탁주식은 예탁원이 명부상 주주 → 주총개최, 배당 등을 위해 실질주주 파악·확정 필요(시간소요) → 해당기간동안 권리변동 방지를 위해 주주명부폐쇄

⇒ 전자증권제도에서는 명부상 주주와 실제 주주가 동일하여 주주명부를 폐쇄할 필요가 없으며, 주주권 행사에 제약이 없음

(2) 기업(발행회사) 입장

① 증권 발행·유통 절차 단축으로 자금조달의 효율성 제고

- 증권실물이 존재할 경우 필요한 다양한 절차*가 사라짐에 따라 신속한 자금조달(상장 등) 및 시장가치 반영의 효율성 증대

* 예) 신규상장 5영업일, 무상증자 8영업일, 액면분할 약 20영업일 단축

◎ 가상 사례 (00사가 주식분할을 하고자 할 경우)

주요 일정	As-Is 시나리오	To-Be 시나리오
주주총회 개최	'18.03.23	'18.03.23
구주권제 출기간	'18.03.26~04.26	'18.03.26~04.09 (병합 공고·통지)
매매거래정지기간	'18.04.25~05.15	'18.04.06~04.18
기준일	'18.04.26	'18.04.09(기준일 = 효력발생일)
신주 효력발생일	'18.04.27	'18.04.10(전자등록일, 유통제한)
교부일	'18.05.15	폐지
상장일	'18.05.16	'18.04.19(전자등록일, 일반등록)

② 주주관리 사무의 효율성 및 안정성 제고

- 기존에는 주주현황을 통상 연 1회 파악하였으나, 전자증권제도에서는 필요할 때마다 주주현황 파악이 가능
 - 대주주 지분율 변화 및 우호주주 파악 등이 쉬워지고 적대적 M&A 등 경영위험에 대한 신속한 대처도 가능

현행	개선
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사유) ①주총개최 등을 위해 주주명부 폐쇄일을 정한 경우, ②기타 필요시 (상장심사, 채무자회생, 공개매수 대응) • (작성빈도) 통상 연 1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사유) ①법령상 필요시, ②일정주기(분기)별, ③발행사 정관 등에 따로 정한 경우, ④기타 계약·약관 등 준수를 위한 경우 • (작성빈도) 특별한 사정없이도 분기별 작성이 가능

◎ 가상 사례 (경영권 위협 등에 적시에 대응이 가능)

- A사는 과도한 배당요구, 경영간섭 등으로 유명한 헤지펀드의 주식매입 정보를 입수하고 소유자명세 작성을 요청하여 주주내역을 파악, A사에 우호적인 주요 주주들을 조기에 포섭하여 헤지펀드의 무리한 요구를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절

(3) 금융기관 입장

① 다양한 증권사무(증명서 발급, 신고 등)를 비대면으로 수행 가능

- 각종 증명서 발급시 위탁원 창구 등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발급 가능*

* 예) (현행) 투자자의 소유증권증명서 발급요청시 증권사는 위탁원을 방문하여 신청·수령 필요 → (개선) 각종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 가능

- 실물을 전제로 하는 보호예수 등 각종 절차도 폐지

② 실물증권 입출고(증권사), 증권담보 보관(은행) 등 관리부담 경감

- 증권사는 잦은 실물증권 입·출고 요청에 따른 사무부담, 비용 부담이 사라짐

* 예) '18년 실물증권 입출고 업무 처리를 위해 하루평균 20여개 증권사가 위탁원 창구를 방문하였으며, 연간 약 9,600건의 실물입출고 업무 처리

- 은행은 담보대출시 더 이상 담보증권 등을 금고에 보관할 필요가 없으며, 전자적 방식으로 질권 설정 가능

* 예) ○○은행은 4,200여건, 3조 7,000억원의 증권담보대출을 취급 → 이중 2,700여건, 2조 9,000억원 대출에 대한 증권담보를 실물로 보관중

(4) 정부 · 감독기관 입장

① 과세당국의 과세기준 명확화

- 증권의 발행,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되므로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 차단 가능

◎ 사례 (양도소득세 탈세)

- (현행) B와 C가 명의개서 없이 실물을 양도 후 D가 명의개서를 한 경우, 주주 명부상 A→D로 양도된 것으로 기재 : B, C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음
- (개선) 모든단계의 양도행위가 전자적 계좌부에 기재되므로 B, C도 양도소득세 납부



②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 등에 기여

- 현재 증권의 발행·상환, 소유상황,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의 정보가 여러 기관에 산재*해 있고 정확성·시의성도 부족

* (예시) 거래소(상장정보), 금감원(전자공시시스템)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등에 산재

- ⇒ 전자등록기관을 중심으로 증권의 발행·상환, 소유상황, 기업 자금조달 현황 등과 관련한 **정확한 정보**를 즉시 수집·분석 가능

◎ 활용 예시

- ①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(5%룰) 준수여부 검증
- ② 기업 임원 등의 특정증권 등 소유상황 보고의무 준수여부 검증
- ③ 최대 주주 등의 소유주식 변동신고의무 준수여부 검증

V 제도시행 관련 유의 사항

- ①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해당 주권을 실물로 보유하고 있던 투자자는 **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제출이 필요함**

-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**특별계좌***에 권리를 등록

* 특별계좌에 등록된 권리는 실물주권 소지 주주가 주식을 제출하거나 해당 주주의 권리가 증명될 때까지 이전을 제한

-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로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

- ② 만약 실물주식을 양도, 증여, 상속 등을 통해 취득하고 아직 본인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않았다면 매매·증여·상속사실 등을 **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필요***함

※ 증권의 취득사유별로 매매계약서, 증여계약서, 출고확인서, 법원 판결문 등 (상세 문의 : 명의개서대행회사(예탁원, 국민은행, 하나은행 / 연락처 불임2)

③ 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경우 실물의 매매거래는 무효

- 따라서 **실물주식을 양수하려는 투자자는 거래 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***할 필요

* 전자등록 대상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(www.ksd.or.kr)에서 확인가능

④ 발행회사는 전자증권제도 참여를 위해 소정의 절차가 필요

- **(상장회사)** 회사주식이 전자증권으로 **일괄전환된 상장회사**가 제도시행 후 새로 주식을 발행하기 위해서는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예탁원에 제출 필요
 - 다만,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예탁원에 **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신청 가능**
- **(비상장회사)** 전자증권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비상장주식의 발행회사가 전자증권 전환을 위해서는 절차 필요

◎ 비상장회사 전자증권 전환 절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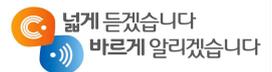
- ① 명의개서대행기관 선임 및 정관 개정
- ② 예탁원에 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 제출
- ③ 예탁원에 전자증권 전환 신청, 전자등록일 지정(신청일로부터 최소 1개월 이후)
- ④ 관련 사항*을 주주에게 공고(1개월 이상) 및 통지(서면)

* 주권효력상실, 전자등록계좌 통지 및 주권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요청 사실



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.
<http://www.fsc.go.kr>

금융위원회 대변인
prfsc@korea.kr



“혁신금융,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”

1 투자자, 주주 Q&A

1. 제가 보유한 주식이 전자등록 대상인지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?

- 전자등록 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(www.ksd.or.kr)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 -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(www.ksd.or.kr) → 전자증권제도 → 제도 시행일의 전환 → 전환대상 종목
 - 상장주식은 전부 전자등록대상이며 비상장주식도 발행인 등이 전자등록을 신청한 경우 전자등록대상에 해당됩니다.

2. 상장주식은 전자증권 의무전환 대상이라던데 상장주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요?

- 유가증권(코스피), 코스닥, 코넥스 시장에 상장된 주식을 의미하며, 기타 K-OTC 등에서 거래되는 주식은 상장주식이 아닙니다.

3. 증권사를 통해 상장주식을 거래하고 있습니다. 그간 실물인출을 요청한 적이 없고, 실물을 가지고 있지도 않는데 권리인정을 위해 별도 절차가 필요하나요?

- 증권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하시는 상장주식의 경우 예탁되어 있는 주식이므로, 이 경우 투자자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습니다.
 - 예탁주식은 특별한 조치없이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며 투자자의 (전자적) 고객계좌에 해당 권리가 자동적으로 등록됩니다.

4. 전자등록된 주식은 실물주권의 효력이 실효된다는데, 현재 제가 보유하고 있는 실물주권에 대한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건가요?

인정받을 수 있습니다. 가까운 명의개서대행회사*를 방문하여 실물주권을 제출하면 자신의 명의의 증권회사의 계좌로 해당 주식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.

* 한국예탁결제원 전지점, 국민은행 전지점, 하나은행 전지점(상세 참고)

○ 또한, 실물주권 소지자가 주권을 제출하기 전까지는 주주명부상 주주의 명의를 기준으로 특별계좌에 권리를 등록*하며,

* 예) 주주명부상 '홍길동'의 이름으로 명의를 되어있는 경우 '홍길동'의 이름으로 특별계좌를 개설하고 해당 주식을 전자등록함

- 해당 주주가 실물주권 제출을 완료한 경우 특별계좌에서 해당 주주명의를 증권회사 계좌로 권리를 이전하여 줍니다.

5. 지인으로부터 실물주권을 샀지만 명의개서를 하지 않아 지인의 이름으로 주주명부에 명의기재가 되어 있습니다. 이 경우 해당주식을 제 이름으로 전자등록 할 수 있는지요?

과거 주식매매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.

○ 명의개서대행회사*를 방문하여 주권의 취득사실, 시점을 증명할 수 있는 매매계약서와 실물주권을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.

* 한국예탁결제원 전지점, 국민은행 전지점, 하나은행 전지점(상세 참고)

6. 실물주식의 양수도 등 매매거래는 무효인가요?

전자등록이 된 주식의 실물거래는 무효입니다. 따라서, 거래전 반드시 해당 실물주식의 전자등록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.

※ 전자등록대상 여부는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(www.ksd.or.kr)에서 확인가능

7. 실물주권이 없어지게 되면, 발행회사에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*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?

* 예) 소수주주권 행사(임시주주총회 소집, 회계장부열람권, 주주제안권 등) 등

- ① 소유자증명서* 또는 ② 소유 내용의 통지** 제도를 이용하여 본인이 주주임을 증명하실 수 있습니다.

* 전자등록기관이 전자증권 소유자의 지위를 증명하기 위하여 발행하는 문서

** 전자등록기관이 전자증권 소유 내용을 발행회사 등에게 통지

- 소유자는 증권사 등(계좌관리기관)에 소유자증명서 발급 또는 소유 내용의 통지를 신청하고, 발행회사에 발급받은 소유자증명서를 제출하거나 소유내용이 통지된 이후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

2 발행회사 Q&A

8. 상장회사 재무관리 담당자입니다. 저희 회사 주식이 전자증권으로 일괄전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, 아직 회사 정관변경을 하지 않았습니다. 문제가 없는지요? 언제까지 정관변경을 해야 하는지요?

- 상장회사라 하더라도, 제도시행 이후에 새로 주식을 전자증권으로 발행하기 위해서는 주식의 전자등록 발행 근거가 기재된 정관을 제출하여야 합니다.
- 그러나, 아직 정관변경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한국예탁결제원에 현행 정관과 정관 개정안을 함께 제출하는 것으로 전자등록 발행 신청이 가능합니다.
- 다만, 주주의 혼란 방지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해 **조속히 정관변경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**, 정관변경이 완료된 경우 변경 정관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.

9. 비상장회사 재무관리 담당자입니다. 저희 회사 주식을 전자등록하고 싶은데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요?

□ 비상장회사가 이미 발행된 주식 등을 전자증권으로 전환하려면 몇 가지 절차가 필요합니다.

① 발행회사는 전자등록 신청 전, **명의개서대행회사**(한국예탁결제원, 국민은행, 하나은행)를 선임하고 **정관을 개정**하여야 합니다.

② 한국예탁결제원에 **발행인관리계좌 개설 및 업무참가 신청서**를 제출해야 합니다.

※ (제출서류 다운로드) <http://www.ksd.or.kr> > 고객정보센터 > 양식/서식 > 자주쓰는 양식/서식

※ 접수처 : 한국예탁결제원 서울사옥 5층 예탁총괄팀(☎3774-3000)

③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후의 **전자등록일**을 지정하여 **명의개서대행회사**를 통해 **예탁원에 전자증권 전환**을 신청해야 합니다.

④ **주주명부상 권리자**(등록질권자 포함) 대상 서면으로 **1회 이상 전자증권 전환 관련 내용***을 통지하고, 정관에서 정한 방법 및 전자등록기관 홈페이지에 **1개월 이상 공고**하여야 합니다.

* 주권효력상실, 전자등록계좌 통지 및 주권 제출 의무 및 전자등록요청 사실

3 금융기관 Q&A

10. 전자증권 전환 대상인 주식에 질권을 설정한 후 실물주권을 담보로 보관하고 있습니다. 이 경우 전자증권제도 시행 후 담보의 효력이 사라지게 되는 것인가요?

□ 담보권자인 질권자가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실물주권을 단순히 보유(점유)만 하고 있을 경우, 해당 주권은 실효되므로 사실상 담보권을 상실할 위험이 있습니다.

- 따라서, 질권자는 질권설정자와 협의하여 명의개서대행회사를 방문하여, 실물주권에 관한 권리를 질권설정자의 증권계좌로 전자등록한 후에 해당 증권회사에서 질권 설정을 하셔야 합니다.

11. 전자증권제도 시행 이후에도 예탁제도를 계속 이용할 수 있나요?

- 전자증권으로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회사는 실물증권의 발행이 금지되므로, 제도 시행일 이후에는 해당 증권에 대해 더 이상 예탁제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.
- 다만, 전자등록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부 증권(기업어음, 창고증권 등) 및 전자증권제도에 참가하지 않은 비상장 주식 등의 발행 회사를 위해 예탁제도는 당분간 계속 운용할 예정입니다.

① 전자증권 전환 주식종목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조회

○ 한국예탁결제원 홈페이지(www.ksd.or.kr) → 전자증권제도 → 제도 시행일의 전환 → “전환 대상 종목”

- 전자증권 주식 종목별 명의개서대행회사 조회 가능(그림 참조)

< 명의개서 대행기관 조회 그림 >

전자증권제도

전환 대상 종목

전환 대상 종목

본 화면에서 제공하는 전환 대상 종목 내역은 법률 또는 발행회사의 신청에 의해 전자증권제도 시행일에 전자증권에서 전자증권으로 전환되는 주식의 명단입니다. (= 제도 시행일의 전환 관련 상세 안내)

전자증권 전환 이후에는 전환 대상 종목의 미래락 실물주권(증권회사에 예약되지 않은 주권)은 효력을 잃게 되므로, 전환 대상 주식의 권리자(주주 및 질권자)는 소유 중인 주식의 전환 대상여부를 꼭 확인 하시기, 제도 시행일 이후의 권리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.

전환 대상 종목 조회

① 전자증권법 부칙 제3조 제3항에 따른 전자증권 전환 대상 주식의 공고문은 해당 종목 조회 후 "공고문" 글자를 클릭하시면 확인 가능합니다.

② 2019년 8월 21일 이후에도 전자증권 전환 대상 실물주권을 보유 중인 주주는 향후 보유 주식의 원활한 권리행사를 위해 해당 종목의 "대행회사(주권 제출처)"로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- 검색구분 전체 조회 개별종목 조회 발행회사별 조회

- 전자등록일 2019-09-16

- 종목 중소기업은행 KR7024110009

조회

주식종류	종목코드	종목명	발행회사명	대행회사 (주권 제출처)	상장구분	공고문
보통주	KR7024110009	중소기업은행	중소기업은행	한국예탁결제원	유가증권	공고문

1 Download

② 명의개서대행회사 방문 및 문의처

○ (한국예탁결제원) 부산 본사, 서울사무소, 광주·대전·대구지원, 전주고객지원센터

- (문의) 한국예탁결제원 증권대행부 ☎ 1577-6600

○ (국민은행)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 또는 전국 모든 지점

- (문의) 국민은행 증권대행부 ☎ 02)2073-8114

○ (하나은행) 서울 여의도 증권대행부 창구 또는 전국 모든 지점

- (문의) KEB하나은행 증권대행부 ☎ 02)368-5800

- 전자증권제도하에서는 실물증권 발행 및 교부가 불필요해지고, 전자등록기관으로 주주확정 등의 업무가 일원화됨에 따라,
- 발행회사는 보다 빨리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, 투자자는 보다 신속하게 권리를 행사(매매)할 수 있음

[참고] 주식권리 사유별 단축 일정

권리사유	상장	비상장
유상증자	5영업일 단축	7영업일 단축
무상증자	8영업일 단축	9영업일 단축
주식배당	5영업일 단축	7영업일 단축
액면분할	약 20영업일 단축	약 21영업일 단축
회사분할	25영업일 단축	26영업일 단축
자본감소	9영업일 단축	11영업일 단축
합병(분할합병)	9영업일 단축	11영업일 단축
주식교환/이전	9영업일 단축	11영업일 단축
종류주식 일괄전환	19영업일 단축	20영업일 단축
CB/BW청구, 종류주식 전환청구	2영업일 단축	34~42영업일 단축